토스뱅크 키워봐요 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토스뱅크 키워봐요 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의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모바 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자동이체(송금)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확인 된 본인명의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 (이하 "**근거계좌**"라 합니다.)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 **근거계좌를 통한 신규만 가능**합니다.

제4조 (가입의 제하)

이 적금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토스뱅크가 복수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경우(파트너 제휴, 이벤트 등)에 한하여 추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제5조 (가입금액)

이 적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0원으로 하며, 가입 즉시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6조 (적립금액)

- ① 이 적금은 근거계좌를 통한 입금만 가능하며 매월(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고 적립 시 최소 금액은 1천원으로합니다.
- ② 제10조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적립된 금액도 제1항의 월 적립금액 한도에 포함됩니다.

제7조 (계약기간)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제8조 (금리적용)

- ① 이 적금의 기본금리는 가입일(자동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습니다.) 당시 모바일앱(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스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토스뱅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라 합니다.) 에 게시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 ② 이 적금에 제9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의 기본금리에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조 (우대금리)

이 적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0조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25회 이상 적립한 경우.

제10조 (자동이체 서비스)

- ① 이 적금은 자동이체가 필수인 상품으로 가입 시 아래 각 호와 같이 근거계좌에서 이 적금 계좌로의 자동이체가 설정되고 해지는 불가합니다.
- 1. 자동이체 금액: 최소 1천원부터 최대 20만원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2. 자동이체 주기 : 가입일에 해당하는 요일로 주 단위 자동이체가 설정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예시: 가입일이 월요일인 경우 매주 월요일로 자동이체가 설정됨)
- 3. 자동이체 시작일: 가입일의 다음 주 중 가입일에 해당하는 요일로 설정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4. 자동이체 종료일: 이 적금의 가입일로부터 26주에 해당하는 주의 가입일에 해당하는 요일로 설정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 ② 이 적금 가입 시 설정되는 자동이체 외에 추가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③ 자동이체는 해당일 11시부터 처리되며 출금계좌 잔액부족 시 미처리 되고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경우 재처리합니다. 단 재처리는 자동이체 해당일 23시까지만 처리합니다.
- ④ 이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설정된 자동이체도 함께 해지 합니다.

제11조 (중도해지금리)

만기일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제12조 (만기후금리)

만기일 이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만기후금리를 적용합니다.

제13조 (만기 자동해지)

- ① 이 적금은 만기일에 자동해지하여 근거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 자동해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1. 이 적금에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 근거계좌에 입금제한 또는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제2항 제2호에 의해 만기에 자동해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직접해지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해지원리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 2. 이 적금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고객이 직접해지하여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해지원리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미리 빼기)

- ① 이 적금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최대 2회까지 적립 금액 중 일부를 미리 뺄 수 있으며 미리 빼기 시에는 최근 납입한 금액부터 뺍니다. 다만, 이 적금에 압류, 지급 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리 빼기가 불가합니다.
- ② 미리 빼기한 금액은 근거계좌로의 이체만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빼기 후 최소 유지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리 빼기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중도해지금 리를 적용합니다.

제15조 (만기 시 자동 재가입)

- ① 이 적금은 고객이 만기일 전일까지 자동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만기일에 자동 재가입이 실행됩니다.
- ② 자동 재가입 금액은 0원으로 하며, 해지원리금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근거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 ③ 자동 재가입 시 제10조에 따라 자동이체가 설정되고 자동이체 금액은 직전 계좌에 등록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 ④ 고객이 자동 재가입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재가입 되지 않습니다.
- 1. 만기일에 이 적금에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2. 이 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
- 3. 만기일에 근거계좌에 입금제한 또는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4. 이 적금의 만기일에 판매 중단 등으로 인하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제한사항)

이 적금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나,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상속인이 토스뱅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에 한하여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3층 | 고객센터 1661-7654 | 사업자번호 462-86-01671

